

#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가.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'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' 정비 대상으로 사업자 경쟁유인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조례 내 해당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.
- 나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 참여 조문을 명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(안 제4조)
- 나.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(안 제7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4. 4. 9. ~ 2024. 4. 29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  
- 평창군 공고 제2024-568호, 건설과-9954(2024. 4. 8.)호
- 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실-5447(2024. 4. 3.)호]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실-5447(2024. 4. 3.)호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(위원회 성별균형 참여) 반영  
[가족복지과-12384(2024. 4. 4.)호] , [건설과-9586(2024. 4. 4.)호]
- 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실-7724(2024. 5. 17.)호]
- 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8095(2024. 5. 24.)호]

##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, 각종”을 “각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지역건설산업체는 <u>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,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) -- ----- <u>각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	<p>제7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u>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[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]

제120조(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)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·거래조건의 결정,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,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,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·고시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예규·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 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·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한 승인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## □ [양성평등기본법]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건설과장 오현웅
연락처	(033) 330 - 2406